

수도권,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수칙

(7.12. ~ 7.25. 시행)

구분	4단계
단계 명칭	대유행/외출 금지
결정·조정 권한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
기준	인구 10만 명당 4명 이상(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) ▶ 전국 : 2,000명 이상 ▶ 수도권 : 1,000명 이상
모임	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(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) ※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※ 예방접종자 인원 제한 인센티브 미적용
행사	- 행사 금지
집회	-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

1그룹 시설	
유흥시설	- 집합 금지 ※ 유흥·단란주점, 클럽·나이트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·무도장, 홀덤펍·홀덤펍게임장

2그룹 시설	
식당·카페	-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·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50m ² 이상 시설) - 22시 이후 포장·배달만 허용
노래(코인)연습장	- 시설면적 8m ² 당 1명 - 22시 이후 운영제한 -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
목욕장업	- 시설면적 8m ² 당 1명 - 22시 이후 운영제한
실내체육시설	시설면적 8m ² 당 1명 / 22시 이후 운영제한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,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, 테니스,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,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,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,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(예:실내풋살 15명) 초과 금지, 대회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시설면적 6m ² 당 1명, 음악속도 100~120bpm 유지,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시설면적 6m ² 당 1명, 샤워실 운영금지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(겨루기, 대련, 시합 등) 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km이하 유지·안내, 샤워실 운영금지
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	- 시설면적 8m ² 당 1명 - 22시 이후 운영제한

* 감염 발생위험과 파급력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1그룹, 2그룹, 3그룹으로 나누고,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하여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

3그룹 시설	
학원	-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m ² 당 1명(좌석 없는 경우) - 22시 이후 운영제한 관악기, 노래학원 노래부르기,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
영화관·공연장	-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- 임시공연 형태의 실내·외 공연 금지 - 22시 이후 운영제한 - 상영관,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
독서실·스터디카페	-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- 22시 이후 운영제한
결혼식장	- 친족*만 허용 *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, 배우자
장례식장	- 친족*만 허용 *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, 배우자
이미용업	- 시설면적 8m ² 당 1명 - 22시 이후 운영제한
놀이공원	- 수용인원의 50% - 22시 이후 운영제한
워터파크	- 수용인원의 30% - 22시 이후 운영제한
오락실·멀티방	- 시설면적 8m ² 당 1명 - 22시 이후 운영제한
상점·마트·백화점	- 판촉용 시음, 시식,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, 휴게공간 이용, 집객행사 금지 - 22시 이후 운영제한
카지노(내국인)	- 수용인원의 30% - 22시 이후 운영제한
PC방	- 좌석 한 칸 띄우기 - 22시 이후 운영제한

* 감염 발생위험과 파급력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1그룹, 2그룹, 3그룹으로 나누고,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하여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

기타 시설	
스포츠경기(관람)장	- 무관중 경기
경륜·경정경마장	- 무관중 경기
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	- 시설면적 6m ² 당 1명의 30%
실외체육시설	-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※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(예:풋살 15명) 초과금지 -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
숙박시설	-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- 전 객실의 2/3 운영
파티룸(공간대여업)	- 시설면적 8m ² 당 1명
도서관	- 수용인원의 50%
키즈카페	- 시설면적 6m ² 당 1명
전시회·박람회	- 시설면적 6m ² 당 1명
마사지업소·안마소	- 시설면적 8m ² 당 1명
국제회의·학술행사	-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
종교시설	- 비대면(예배·미사·법회 등)만 허용 - 모임·행사, 식사·숙박 금지